

# EU, 육류산업의 동향과 정책

육류부문은 유럽연합(EU)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다. 네 종류의 육류(쇠고기·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염소고기)는 유럽 연합 농산물 생산 총액 중 25% 정도를 차지한다. 유럽 농가의 절반 이상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반추동물(소, 양, 염소)을 사육하는 농민의 90% 정도는 전문적인 생산자이다. 육류는 단백질의 주공급원으로 유럽 지역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EU 육류부문의 정책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육류를 적절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최근 공동농업정책(CAP)의 변화 양상도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방향이 소비자·가축 생산자·환경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1. 육류산업 동향

### 1.1. EU의 육류부문(2004년 EU 확대 이전)

육류부문은 농민·생산자 조직·도축업자·유통과 마케팅 관련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축과 사육 농민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육류의 유통이 EU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하나나 그 이상의 육류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유럽 쇠고기 생산량의 7%를 차지하고 있고, 아일랜드 전체 농업생산액의 25%

를 점한다. 돼지의 사육은 벨기에·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 등이 특화되어 있고, 스페인과 영국이 양고기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스웨덴 등지와 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의 산지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이 필수적인 영농이고,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농축산업(husbandry)이 전무할 실정이다.

마케팅 방식도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가축을 직접 판매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축장을 이용한다. 육류 가공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생산자 단체나 개별 기업이 담당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가금육의 경우는 통합 생산방식(사료, 사육, 육류 가공을 한 회사가 담당)이 일반적이다.

## 1.2. 육류부문 관련통계

2000년 기준 EU 내 총 가축 수는 1억 1,800만 두였고<sup>1)</sup>, 이 중 방목하는 가축이 7,200만 두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축우가 5,900만 두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3,000만 두로 그 다음이었다. 쇠고기·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염소고기가 EU이 생산하는 육류의 주요한 품목이다.

## 1.3. 소비동향

EU의 소비자들은 매년 3,500만 톤 정도의 육류를 소비한다. 이는 1인당 평균 92kg를 소비하는 셈이다. 이 중 돼지고기가 44kg,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가 20kg, 가금육이 23kg를 차지한다. 근래 육류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거나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부문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96년과 2000~01년 두 차례의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쇠고기 판매가 큰 타격을 받은 반면, 돼지고기와 가금육 판매는 이를 통해

---

1) 이에 포함된 가금류는 300만 마리였는데, 이를 가축으로 환산하면 1500만 두에 해당한다.

반사이익을 얻었다. CAP 개혁의 결과 보다 저렴한 곡물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점도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양고기의 경우 2001년 영국·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 등지에서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해 수급불균형에 처했다.

#### 1.4. 국제교역 상황

국제 시장에서 EU은 전체 육류 생산의 16%를 담당하는 주요 생산자의 위치에 있다. 세계 교역량에서 EU이 차지하는 순 비중은 12.8%이고,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는 39%에 달한다. 몇몇 경우 무역수지는 EU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EU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은 아르헨티나, 보스와나, 브라질 같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특혜접근 협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5. EU 육류부문 전망

EU 확대 이후 25개 회원국의 쇠고기 총 생산량은 2010년 8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쇠고기 소비량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쇠고기 시장은 2010년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2004년 2,13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이 예상되고, 2010년까지 2,3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증가분 중 15% 정도는 신규 회원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금육 생산 역시 늘어날 전망이어서 2004년 1,090만 톤에서 2010년 1,19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 육류산업의 정책동향

육류와 관련이 있는 CAP 조항은 오랜 기간동안 발전해 왔고, 점차적으로 생산물의 품질을 높이면서 농가의 소득 전망을 밝게 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시장지지와 여타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육류 시장 정책과 관련된 총 예산은 2004년 기준으로 100억 유로에 달한다.

표 1 EU의 육류부문 무역 균형 대차대조표

단위: 1,000 톤

	생산 가능량	수입	수출	소비량(식용)	자급률(%)
EU-15 <sup>2)</sup>	35,565	1,044	3,408	33,335	107
벨기에/룩셈부르크	1,639	312	1,036	921	178
덴마크	2,003	164	1,617	590	339
독일	6,269	2,137	1,285	7,256	86
그리스	486	405	10	881	55
스페인	4,810	321	624	4,538	106
프랑스	6,290	1,183	1,938	5,627	112
아일랜드	1,107	74	825	367	302
이탈리아	3,829	1,214	364	4,693	82
네덜란드	2,994	569	2,242	1,291	232
오스트리아	834	143	215	771	108
포르투갈	784	189	14	953	82
핀란드	339	33	30	342	99
스웨덴	570	107	59	618	92
영국	3,611	1,340	558	4,487	80

## 2.1. 지원 속성의 변화

1992년 CAP 개정안(쇠고기·송아지 고기 관련)과 2001년 개정안(양고기·염소고기)을 거치기 전까지, 축우와 양을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 체계는 가격 수준을 높게 유지하거나 사육 두수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 (support payment)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격이나 생산 수준과 연계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었고, 현재 농민들은 소득 유지를 위해 직접원조지불(direct aid payment)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쇠고기·양고기·염소고기 생산 농가의 경우 방목이나 목초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만이 ‘집약적인’ 사료 배급을 하거나 실내에서 사육을 한다. 유럽 지역 내에서 단일하고 전형적인 사육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EU의 지원 수단은 점차 간소화되었고 모든 유형의 생산자들은 이전보다 단일화된 양

2) EU-15의 경우는 제3세계와의 수입·수출 물량만을 계산.

식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다.

흰 육류는 농가 외부에서의 사육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축사에서 사육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료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곡물이나 혼합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U은 이러한 ‘집약적’ 형태의 영농 체계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한 경우가 없다.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은 수출 상환(EU 수출보조의 한 형태)과 국경 보호에 국한되어 왔다. 돼지고기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영 저장(private storage)은 EU 내수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교역과 관련된 이러한 수단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 2.2. 최근 발전 동향

‘아젠다 2000(Agenda 2000)’을 통한 CAP 개혁의 일환으로 1999년 쇠고기 지원 체제는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결과 EU의 보조를 받아 쇠고기 초과 공급분을 구입하는 관행은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할 정도의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시장가격지지 축소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들은 기준 연도 사육 두수에 기초한 프리미엄 형태로 직접원조(direct aid)를 받게 되었다.

양고기·염소고기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2001년에 이루어졌다. 시장 가격에 의거하여 프리미엄을 지급하던 과거의 체계는 향후 몇 년간 고정된 단일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흰 육류에 대한 직접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부문은 CAP 개혁의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1993, 1999년 CAP 개혁을 사료 가격이 낮아진 결과 사료비용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자들은 수혜를 입었다.

### 3. 육류산업 관련 CAP 전망

CAP은 지속적인 변화 선상에 놓여있다. 2003년 6월 26일, EU은 CAP의 근본적인 개혁에 합의했고, 쇠고기와 양고기를 포함한 농가부문에 대한 지원 방식을 완전히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CAP 하에서 이루어지는 가축 관련 모든 형태의 직접지원직불은 일정기한 내에 ‘단일농가직불(single farm payment)’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농가들은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사육 과정에서 최소한의 후생기준(welfare standard)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생산량과 관련해서 지원지급금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de-coupling). 이는 EU이 실시하는 직접지지의 목적이 농민들이 시장에서 얻는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정 기간 동안 지원지급이 확실히 이루어지면, 농민들은 생산 방식·품질·마케팅 방식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환경적·후생적 편익을 얼마나 증진시키는가와 관련해 지원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sup>3)</sup>. 이러한 지원은 EU과 회원국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농촌개발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CAP 하에서의 ‘생산으로부터의 분리(de-coupling)’의 실행은 가축부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sup>4)</sup> 특히 쇠고기와 양고기 부문의 경우 CAP이 ‘조방화(extensification)’를 지향함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

3) 이를 상호준수(cross-compliance) 규정이라고 정의한다.

4) [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publi/reports/mtrimpact/rep\\_en.pdf](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publi/reports/mtrimpact/rep_en.pdf)

## 4. EU 확대가 육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EU의 확대에 따라 영농부문 전반, 특히 육류부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가축의 종류와 생산하는 육류에 따라서 파급 정도는 다양할 것이다. 또한 신규 가입국에서 육류부문은 식품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부문은 EU 확대로 이익을 볼 전망이다, 약 100만 톤의 돼지고기가 추가로 생산될 것이다. 중부·동부 유럽국가의 가금육 생산업자들은 EU 가입에 따른 시장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중앙·동부 유럽국가의 쇠고기 생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는 우유 할당량(milk quota) 수준인데, 이는 송아지의 대부분이 젖소 중에서 태어나고 전문적으로 쇠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EU와 후보 국가들은 EU 확대 이전 상당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했고, 이 결과 상호간의 무역 장벽을 축소하고 수출 보조와 수입 관세를 점차 철폐하기로 했다.

## 5. 육류무역 동향

1994년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sup>5)</sup>을 통해 확립한 무역 원칙은 EU의 육류 부문에도 적용된다. 특히 정부 개입을 통한 국내시장지지

---

5)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열린 GATT 각료회담에서 UR 협정이 회원국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고, 이에 따라 GATT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마라케시선언으로 WTO 협정절차가 시작되었고, UR도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비용을 감축하는 한편, 수출상환 감축과 국경 보호 수준 완화를 통해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기에 쇠고기 부문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1995~02년 동안 EU 육류 부문의 대외 교역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1) 쇠고기·송아지 고기·양고기·염소고기의 경우는 대부분의 수입이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하에서 이루어졌다. 수출 측면에서는 무역 대상국인 제3세계 국가들이 무역 조치를 도입하면서 모든 육류 부문이 이전보다 외부의 영향에 타격을 받기 쉬워졌는데, 최근의 광우병이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가 대표적이 사례이다.

(2) 향후 EU은 식품안전성이나 가축후생과 같은 비교역적 기능이 무역 협정(특히 WTO 다자간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무역이 EU의 이러한 노력(예를 들어 가축 후생 수준의 유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육류 품질과 상품성 향상

경쟁적인 식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민과 여타 육류 유통 사슬 종사자들이 최상의 품질을 가진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 6.1. 시장출하 기준

육류부문은 오랫동안 시장출하 기준(marketing standard)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CAP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가금육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시장 출하 기준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EU 시장 출하 기준의 주요 목적은 각국의 상황에 맞고 규제가 적은 공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EU 내외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EU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하는 식품의 신선함과 품질,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EU 규정이 제정되었고, 계속 평가 과정을 거치고 있다.

## 6.2. 도체 분류(carcaass classification)

도체 분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보다 기름기 없는 정육(leaner meat)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도체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EU는 도체분류 격자시스템(carcaass classification grid system)을 권장해 왔고, 기준(예를 들어 모양)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와 기름기 없는 고기 함량을 기준으로 도체에 대한 등급을 정했다. 이에 더해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는 육류 저장시설(쇠고기에만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용으로 판매하는 육류에 대해 최소한의 품질 기준만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 내 모든 도축된 돼지고기는 품질에 따라 등급화가 이루어지고, 생산자들은 EU 규정<sup>6)</sup>에서 명시한 품질 기준에 따라 지급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해 육류표시제(meat labelling)를 향상시킴으로써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추적이력제(traceability)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은 육류의 종류에 따라서 진행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 EU 규정은 쇠고기 부문에 관해 가장 포괄적이다. 현행 EU 표시제 입법에 대한 수정 지침<sup>7)</sup> 육류를 이용한 제품의 표시제와 관련하여 ‘육류(meat)’의 정의를 엄격하게 하였고 이 수정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은 소시지, pâté(고기파이의 일종), 조리된 육류, 포장육 등이다. 표시제 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6) Council Regulation(EEC) No 3220/84, 1984

7) Commission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00/13/EC of the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labelling, presentation and advertising of foodstuffs (OJ L 109, 6.5.2000).

예를 들면 EU는 2003년에 양고기에 대한 식별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EU는 생산자에게 이러한 체계 하에서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여 육류 제품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을 다각화하고, 오용과 모방을 방지,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 7. 육류산업과 공공재

육류 상품의 이미지가 육류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와 공공부문에서는 육류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산되기를 원한다.

### 7.1. 육류산업과 환경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류산업은 공공부문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목한 가축(주로 소, 양, 염소)을 생산하는 농가는 EU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잠재적인 환경 피해(예를 들어 과도한 방목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로 하여금 보다 조방적인 방식으로(즉,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사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상호교차 의무의 준수는 최근 CAP 개혁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비율이 높은 부문(예를 들어 가금육과 일부 쇠고기, 양고기 생산 체계)에서는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부문에서는 가축 분뇨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분뇨와 찌꺼기(slurry) 처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농가당 가축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지역에서는 분뇨의 저장과 살포에 대해서 국가·지역 단위에서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U 차원에서는 영농 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골

격이 있다.

## 7.2. 가축 후생

EU은 가축 후생과 관련된 많은 법령과 규약을 제정했고 국가 기관들이 이를 집행·강화한다. 2003년 6월 CAP 개혁안은 EU의 직접지원과 가축 후생 수준을 연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은 사회와 EU 의회에서 요구하는 가축 후생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가축을 수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출 상환금의 규모를 축소했다. 또한 새로운 규제<sup>8)</sup>를 통해서 이러한 보조가 허용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했다. 이 규제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물을 불필요하게 장거리 수송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가축 후생의 측면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제3세계 국가에서의 수의학적 통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7.3. 질병과 감염증

가축 질병은 가축과 가금류 사육 과정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다. 구제역 같은 질병은 농업 활동 자체와 농촌 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 EU은 이러한 발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2001년 구제역 사태 때 이 질병이 영국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염증(zoonoses;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과 같은 가축 질병의 경우는 감염원이 가축에 국한되지 않고 음식, 특히 고기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육류 부문은 질병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위기(살모넬라균이나 광우병)를 겪어왔고, 이 결과 육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잃음으로써 육류 수요가 감소하는 처지에 놓였다. EU의 규제와 질병 통제 메커니즘은 이러한 사태들을 반영하면서

---

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8/2003

개정되어 왔고, 수입육에도 적용된다.

#### 7.4. 가축 사료

몇몇 식품 안전성 문제는 농가가 구입한 가축 사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EU은 가축 사료 관련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가축 사료로 인한 발병 사태의 위험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축 사료에 관한 이제까지의 EU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 사료 성분(복합사료, 특별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사료, bioprotein이나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마케팅과 표시제에 관한 규정
- (2) 사료 첨가제의 승인·마케팅·표시제에 관한 규정
- (3) 사료 내 금지 물질(곰팡이 독mycotoxin, 중금속 등)에 관한 정
- (4) 사료 생산 기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규정
- (5) 영양과 관련된 공식기관의 검역에 관한 규정

### 8. 쇠고기·송아지 고기

EU의 쇠고기 시장은 2000년 광우병 파동과 2001년 구제역 파동을 겪은 이후 생산·소비·수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초과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EU의 안전 기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사안들과 더불어 쇠고기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EU은 쇠고기 지원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 8.1. EU-15 현황

쇠고기는 여전히 EU 육류 부문에서 가장 큰 부문이고, EU-15 농업 생산액 중 10%를 차지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9) EU-15에서 생

산하는 쇠고기의 2/3은 낙농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EU 낙농업 지원 체계의 발전은 쇠고기 부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suckler cow(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용도로 키우는 암소)에서 나온 송아지들이다.

EU은 통상 연간 650~700만 톤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이는 전 세계 쇠고기·송아지 고기 생산량의 13% 수준이다. 곡물을 사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아일랜드, 영국, 대서양 인근 국가와 산간지역에서는 목초지를 이용해 사육을 하는 조방적(extensive) 형태의 생산 체계가 일반적이다. 눈여겨 볼 점은 이러한 지역에서 사육하는 소의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발육 상태가 좋고 맛이 진하다는 것이다. suckler cow에서 나온 송아지들은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기른다. 곡물을 사료로 주는 방식은 더운 기후로 인해 여름철 초목의 생장이 멈추는 유럽 남부나 곡물 생산이 풍부한 유럽 중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곡물 사료를 이용해 소를 기를 경우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적정 도축 중량에 빨리 다다른다. 이러한 사육 방식을 집약적(intensive)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을 이용해 착유용 암소를 기르면 더 많은 송아지를 낳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른 소와 송아지는 고기의 색과 맛이 옅은 편이다.

조방적·집약적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조리 방식도 매우 많아서 유럽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호를 보인다. 유럽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쇠고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른 것이지만, 10% 정도는 송아지에게 유동식이나 우유만을 먹여 전반적으로 희거나 옅은 색을 띠는 고기를 생산하기도 한다.

쇠고기 생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부침을 거듭해 왔다. 다시 말해, 생산

---

9) 2002년 기준으로 가장 큰 부문은 낙농업으로 전체 생산액의 14%를 차지했다.

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회복되면 줄어들었던 생산량이 회복되는 사이클을 2-3년 주기로 반복해 온 것이다. 송아지 고기 생산은 낙농가들이 ‘부업’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은 편이다. 최근 쇠고기·송아지 고기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축 질병이 소비에 미친 영향이다. 특히 광우병 사태로 인해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기존의 생산 주기가 무너졌고,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폭락했다. 가축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진 덕분에 쇠고기와 송아지 고기 소비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 8.2. EU 정책수단의 역할

1968년부터 이어져 온 쇠고기·송아지고기 지지체계(support regime)는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최근 육류 부문이 겪은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원래 육류부문 지지체계는 ‘전통적인’ CAP 수단(생산 과잉이 발생할 경우 EU의 재정지원을 받아 초과분은 구입하여 국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관세를 이용한 국경 보호 조치를 국내 시장가격의 하락을 막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에 더해 초과 생산량 중 일부는 수출 상환 지원을 통해서 수출할 수도 있었다.

또한 개인보관지원(private storage aid; PSA) 제도를 통해서 무역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조를 함으로써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를 한시적으로 보관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송아지 고기는 낙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성격이 강하기에 직접 보조를 받지 못했다.

1992, 1999년 CAP의 결과 정부가 개입하는 구매·보관 방식은 축소되었다. 현재 EU는 회원국이나 특정 지역의 쇠고기 가격이 톤 당 560유로 이하로 떨어질 때만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 개입은 시장 관리 수단으로서 보다는 안전망(safety net)으로서의 기능이 강하고, 개인보관지원도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 협상의 결과 관세 수준과 수출 상환에 할당할 수 있는 비용이

축소되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여전히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EU 쇠고기 부문의 시장지향성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현재 EU의 지지는 직접적인 원조를 통해 농가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다.

### 8.3.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1999년 CAP 개혁은 농가가 직접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EU 내 가구당 보유 가축규모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가에 대한 직접 지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농가지지수단을 갖추게 되었다.

- (1) 정부개입가격 축소에 대한 보상: 도축 프리미엄(slaughter premium)과 쇠고기 특별 프리미엄(special beef premium)
- (2) 쇠고기 생산 전문 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 suckler cow 프리미엄
- (3) 조방적 사육 장려: 조방화 지급(extensification payment)
- (4) 조건불리지역이나 쇠고기 생산이 특화된 회원국 생산자에 대한 지원: additional suckler cow premium
- (5) 연중 시장 균형 조율: deseasonalisation premium
- (5) 회원국의 특정 생산 시스템 지원: national expenditure envelopes

국가 기관들은 쇠고기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전보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지불금 중 일부는 회원국의 개별적인 국가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농가와 사회의 요구를 기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국은 농가가 생산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얼마나 준수했는지에 따라 지급금을 차등 배분할 수 있다.

### 8.4. 쇠고기 · 송아지 고기부문의 신정책

2003년 6월 26일 EU은 CAP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이 개혁을 통해서 EU의 농가지지 방식이 일대 전환을 맞았다. 새로운 CAP은 소비자와 납세자의 입장을 더욱 반영하는 방향을 택했고, 생산자들에게도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시켜 주었다. 앞으로는 보조의 대부분

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다. 회원국들은 생산 포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과 명백한 한계를 정한 뒤 생산과 보조를 부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단일농가직불 방식이 현행의 직접원조지불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 새로운 단일직불 방식은 농가 생산량이나 품목과 관계가 없다(de-coupled). 지불 금액의 액수는 기준연도(2000~02년)동안 농가가 받아온 직접원조지불금에 기초하여 산정될 것이다. 단일직불 방식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회원국은 이를 2007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생산과 지원의 완전한 분리가 원칙화 된다. 하지만 회원국들은 단일직불안을 시행하면서 생산자의 선택(partial decoupling of direct payment)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할 경우 해당 회원국은 최대 100%의 suckler cow 프리미엄과 송아지 고기에 대해 최대 40%의 도축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방식 외에도, 생산과 연계하여 최대 100%의 도축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 최대 75%의 special male premium을 지급할 수 있다.

개혁 후의 CAP은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의무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제까지 상호준수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 왔으며, 환경적인 기준에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재 상호준수는 의무사항이 되었고, 직접지불을 받는 모든 농가는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식품 안전성·가축 건강과 후생 분야와 관련된 18가지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농가가 이를 어길 경우 직접지불금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EU은 도축 분류 규정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쇠고기 생산자들이 육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8.5. 소비자의 신뢰 확립

EU이 쇠고기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유럽 지역 소비자들이 쇠고기 생산 방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일조했다. 이에 따라 생산 농가가 소비자들이 요구에 더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EU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 (1) 쇠고기 표시제(소매상들이 생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 (2) 가축 식별제(생산 농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3) 사료 원료 규정 강화에 이에 대한 통제 수단 개선
- (4) 수입 쇠고기에 대한 통제 강화
- (5) EU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쇠고기 판촉

더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좋은 품질의 육류를 공급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면 생산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소들은 귀에 인장을 찍고 혈통과 농가와 시장 간 이동 현황을 보여주는 ‘신분증’을 갖추어야 한다. 쇠고기 표시제와 가축 식별 규정을 통해서 소·쇠고기에 대해서 완전한 추적이력제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벌크 형태의 쇠고기뿐만 아니라 얇게 저민 쇠고기에까지 적용된다. 소매상들은 자발적으로 상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이를 라벨에 명기해야 한다.

EU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소를 수출할 경우 지급되는 수출 상환금의 한도와 횟수를 축소했다. 이는 가축 후생을 중시하는 사회의 요구와 EU 이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인데, 2003년 2월 도입된 이 새로운 규정의 결과로 살아있는 가축을 불필요하게 장거리 수송하는 것은 제한받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도축용 소를 대상으로는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이집트나 레바논과 같은 제3세계 국가에 수소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종교적·문화적 이유로 이러한 가축을 상당수 수입해 왔다. 교배를 목적을 암소를 수출하는 것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보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EU 집행위원회의 조치는 제3세계에서의 수의학적 통제(veterinary control)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육류 제품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쇠고기·송아지 고기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EU은 회원국들과 함께 정보·관측 캠페인에 출자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높이고 있다.

## 8.6. EU 확대가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쇠고기는 EU 결성·이행 기간 동안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이다. 중부·동부 유럽의 쇠고기 생산량은 1989~01년 동안 40% 이상 감소하여 연간 1백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부·동부 유럽 지역의 쇠고기 생산은 주로 낙농가들이 담당해 왔고, 일부만이 suckler cow와 전문화된 생산 농가의 몫이었다. 소의 성장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suckler cow 사육 농가와 전문화된 쇠고기 생산 농가를 육성하는 것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1~02년 동안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가격 하락·소득의 증대·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상승 등으로 이 기간 이후 소비량은 1인당 연간 9.3~9.5kg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2년 EU 집행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중부·동부 유럽 지역의 소비량은 2009년까지 100만 톤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소비량의 안정세와 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쇠고기 순수입은 2009년까지 21만 4,000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이다.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는 소량이나마 계속적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회원국들이 쇠고기 출하능력은 도축 과정에서 가축의 건강 상태와 위생 기준에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들 국가는 향후 몇 년간 쇠고기 순수입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8.7. 교역의 중요성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EU의 수출보조 사용은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광우병 등 질병으로 인한 수출 제한이 맞물려 EU의 쇠고기 수출은 1995~01년 평균 91만 톤에서 2002년 55만 톤 수준 미만으로 감소했다. WTO 협정으로 EU 쇠고기 수출량 중 수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양은 82만 2천 톤으로 제한되었다. EU으로 들어오는 쇠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은 특혜접근협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량은 꾸준히 40만 5,000 톤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WTO 협정이 규정한 EU의 최소 시장접근 물량을 충족시키는 양이다. 2002년 쇠고기·송아지 고기의 총 수입량은 47만 5,000 톤이었다.

## 9. 돼지고기

돼지고기 생산을 결정하는 주체는 돼지사육 농가와 영양·안전 기준 등을 만족시키는 사료 공급에 기초한 농가경영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토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사료비용이 생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EU은 제한된 수준의 시장 지지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돼지고기 생산은 상당 기간 동안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지녀왔다. 현재 돼지고기 생산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CAP과의 관련성이 적은 편이고, 오히려 육류 품질·가축후생·사육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련성이 밀접하다.

### 9.1. 돼지고기 부문

EU은 연간 1,780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산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수준은 하락했다. 생산량이 줄어들어 안정 추세에 접어들면서 가격 조건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2002년 기준으로 주요 생산국은 독일(23.1%), 스페인(17.5%), 프랑스(13.2%), 네덜란드(7.7%), 덴마크(9.9%) 등이다. EU 내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43kg 정도이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국가 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EU 전체 육류 부문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시장도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고, 이 여파는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쇠고기 부문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다른 육류(주로 가금육)의 소비량이 증가했고, 돼지고기 가격도 2000~02년 가격이 상승하는 등 반사이익을 보았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신규 투자를 실시했고 돼지 사육 두수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광우병 창궐 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몇몇 조치(예를 들어 돼지고기 사료에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조치)로 인해 돼지·가금류 사료의 가격이 올랐고, 이로 인해 생산자의 마진이 감소했다.

2001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발병한 구제역은 돼지고기 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구제역 발병 이후 가축의 이동이 제한을 받았고, 이에 더해 제3세계로의 수출이 금지되었다. 이는 돼지 도축과 판매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EU 돼지고기 부문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돼지고기 부문이 질병 관련 문제에 극도로 민감해지도록 만들었다. 1990년대에는 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지에서 돼지 콜레라(swine fever)가 발병하기도 했다.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돼지고기 소비는 앞으로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2001~01년 EU-15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의 일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9.2. 돼지고기 생산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

돼지고기 생산자와 돼지고기 부문에 대한 EU 수준의 지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영 저장을 지원<sup>10)</sup>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세계무

---

10) [편집자주] EU의 보조를 받아 사영업자들이 돼지고기를 저장함으로써 초과 공급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역기구 협정에 의해 수입 관세가 고정되어있어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은 편이고, 수출 상환 정책의 경우도 돼지고기가 과잉 공급되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EU의 돼지고기 시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돼지고기 생산자들 역시 EU으로부터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돼지고기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들의 수입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이다.

곡물 가격과 다른 사료 원료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돼지고기 부문에 특별한 이익을 주지 못했다. 1992, 1999년 CAP 개혁 이후 돼지고기 부문의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앞으로 이루어질 CAP 개혁이 사료 가격을 낮출 것이므로 이러한 경쟁력 제고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에 한해 이러한 예측이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몇몇 회원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서 사료 가격이 올랐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은 예상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 9.3. 환경측면 이슈

돼지고기 생산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국가의 일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예를 들어 벨기에의 West Flanders, 프랑스의 Brittany 지방 등). 이러한 지역 집중성과 가축 폐기물을 처리(예를 들어 퇴비화)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EU과 각 회원국들은 법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측면의 제재는 돼지고기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돼지고기 생산 중단을 권장한 결과 돼지 두수와 생산량이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직 돼지고기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 9.4. 소비자들의 관심 사항

돼지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이다. 기름기가 적은(leaner) 돼지고기를 원하는 경향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소비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소비자들은 가축 후생 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대응하여 최근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돼지고기 산업 부문은 1984년부터 도체등급기준(car cass grading standards)을 도입함으로써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 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9.5. EU 통합이 돼지고기 부문에 미치는 영향

EU의 확대 통합은 신규 회원국만이 아니라 EU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신규 회원국은 EU 가입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중부·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돼지고기는 가장 많이 생산·소비되는 육류이기 때문에 증가 폭이 클 전망이다. 폴란드는 중부·동부 유럽에서 최대 생산·소비국의 위치를 계속 지킬 것이며, 앞으로도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 국가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소비량도 증가할 것이다.

#### 9.6. 교역 전망

EU 돼지고기 부문에 있어서 수입은 그다지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량은 연간 5만 톤 수준으로 2003년 EU 전체의 생산량인 1,780만 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의무수입물량(TRQ)으로 25만 톤을 수입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도축 기준의 차이, 검역 등)로 이보다 적게 수입할 것이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 수출량은 연간 100~150만 톤에 달해 상당히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국(주로 제3세계 국가)들이 수의학 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EU의 수출 정책은 중요한 수입국(일본이나 러시아)의 시장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WTO 협정과 예산 제약으로 인해 수출 상황은 더욱 제한되었다.

## 10. 가금육

가금육부문은 닭·칠면조·거위·오리·뿔닭(guinea fowl) 같은 다양한 종류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닭으로 EU 가금육 생산량의 70%를 점하고 있고, 칠면조가 20%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가금육 생산은 계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생산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질병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EU가 가금육 부문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신 EU은 가금육의 교역·보건·후생·환경적인 측면에 관심을 쏟고 있다.

### 10.1. 가금육부문의 발전

가금육부문은 재생산 사이클이 빠르는데, 이는 조류의 성장 속도가 빨라 개체가 빠른 속도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비용은 생산 비용 중 일부만을 차지한다. 1992, 1999년 CAP 개혁 이후 곡물과 사료 가격이 낮아졌고, 가금육 생산은 이에 힘입어 900만 톤 수준까지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금육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가금육이 다른 육류 부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제역이나 광우병 파동 등으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쇠고기 소비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가금육 소비는 줄어들었다.

중장기적으로 가금육 생산은 증가가 둔화되거나 최근 몇 년 동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최근 가금육 수입이 크게 증가(1999~01년 동안 35

만 톤 증가)해 EU의 생산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 특히 가금육 소비량 증가분의 대부분은 브라질과 태국에서 수입된 저렴한 가금육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육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EU은 가금육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이 될 수도 있다.

## 10.2. 미래의 과제

현재 가금육 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조류 독감과 같은 질병 창궐
- (2) 외부 압력(국제 가금육 시장의 불균형, 일부 제3세계 국가의 부적절한 관세·비관세 장벽 구조)
- (3) 육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충족

EU의 통합 확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한편으로는 신규 회원국의 생산자와 도축업자들은 EU의 엄격한 생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 EU-15 생산자들이 생산비용이 낮은 신규 회원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금육 산업은 중·동부 유럽지역에 대규모로 입지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직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1990년대 동안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소규모 생산업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동부 유럽에서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가 가장 큰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출 국가이기도 하다.

## 10.3. 교역의 역할

EU은 가금육 부문에 관련해 어떠한 국내지지 체제(regime)도 수립한 적이 없다. 과거에는 관세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곡물·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쇄시킴으로써 생산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마진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WTO 협정 이후 이러한 관세 장벽은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신선 가금육에 대해서는 유럽의 보호 정책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가공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

에서 EU의 가금육 부문은 국제 시장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제3세계 국가로의 수출도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 10.4. 환경측면의 제약

가금육에 대한 지지 체제 부재로 인해, EU의 지원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주요한 규제 수단인 'Council Regulation (EEC) No 1906/90' 과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1538/91' 은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하고,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시장 출하 기준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가금육 분류 규정: 품질 · 외양 · 수분 함량 · 중량 등에 따른 등급화
- (2) 특별시장출하기준(special marketing term criteria): 사육 방식을 명시하도록 규정
- (3) 라벨링 규정

가금류는 '집약적'으로 기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다. 이 때문에 분뇨 처리나 질병 감염의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조류 독감 같은 질병은 무리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이런 이유로 EU은 질병 퇴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현재 준비 중이다.

EU은 대다수 첨가제 · 항생제 · 성장촉진제에 대해 사용 금지 혹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수입 가금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EU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출처 : EU 집행위원회  
(유찬희 ruledes78@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